

세액공제신청서

※ 제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
(전화번호:)	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신청 내용	⑥ 구	분	⑦ 근거법령	⑧ 코드	⑨ 공제율	⑩ 대상세액	⑪ 공제세액
⑩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	영 제4조제8항	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1				
⑩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6조의4제4항		14Z				
⑩③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4항		14M				
⑩④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 고정 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8항		18D				
⑩⑤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12항		18L				
⑩⑥ 교육기관 무상 기증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16항		18R				
⑩⑦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9조제14항		13L				
⑩⑧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9조제14항		10E				
⑩⑨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9조제14항		13M				
⑩⑩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9조제14항		16A				
⑩⑪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9조제14항		10D				
⑩⑫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9조제14항		16B				
⑩⑬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조제6항		176				
⑩⑭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조의3제14항		14T				
⑩⑮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조의4제12항		14U				
⑩⑯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2조의2제5항		18E				
⑩⑰ 소재·부품·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	영 제12조의3제15항		18N				
⑩⑱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법인 등 인수 세액 공제	영 제12조의3제15항		18P				
⑩⑲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	영 제17조제5항		18H				
⑩⑳ 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	영 제21조제13항		13W				
㉑ 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사업화시설)	영 제21조제13항		13X				
㉒ 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)	영 제21조제13항		13Y				
㉓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)	영 제21조제13항		1B1				
㉔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사업화시설)	영 제21조제13항		1B2				
㉕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)	영 제21조제13항		1B3				
⑩㉖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11제7항	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8I				
⑩㉗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	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4				
⑩㉘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2	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77				
⑩㉙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	영 제22조의3	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A				
⑩㉚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4	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2				
⑩㉛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5	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6				

⑥ 구 분	⑦ 근거법령	⑧ 코드	⑨ 공제율	⑩ 대상세액	⑪ 공제세액
⑬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6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5			
⑬③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8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B			
⑬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9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8B			
⑬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(기본공제)	영 제22조의10제6항	18C			
⑬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(추가공제)	영 제22조의10제6항	1B8			
⑬⑦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11제5항	1B7			
⑬⑧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	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	14N			
⑬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2제3항	14S			
⑭①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영 제26조의3제6항	14X			
⑭②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영 제26조의3제6항	18J			
⑭③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4제17항	14Y			
⑭④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5제11항	18A			
⑭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7제10항	18F			
⑭⑥ 통합고용세액공제	영 제26조의8제11항	18S			
⑭⑦ 통합고용세액공제 (정규직 전환)	영 제26조의8제11항	1B4			
⑭⑧ 통합고용세액공제 (육아휴직 복귀)	영 제26조의8제11항	1B5			
⑭⑨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7조의3제3항	18K			
⑭⑩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	법 제30조의2제4항 (2022.12.31.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H			
⑮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법 제30조의4제5항	14Q			
⑮②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법 제30조의4제5항	18G			
⑮③ 상환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96조의3제8항	10B			
⑮④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99조의11제4항	18Q			
⑮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(납세의무자)	영 제104조의5제6항	184			
⑮⑥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(세무법인)	영 제104조의5제6항	14J			
⑮⑦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14제2항	14E			
⑮⑧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	영 제104조의15제6항	1B6			
⑮⑨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0제5항	140			
⑮⑩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2제3항	14P			
⑮⑪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1항 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I			
⑮⑫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2항 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K			
⑮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4항 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R			
⑮⑭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산업자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7제3항	18M			
⑮⑮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9제2항	10C			
⑮⑯ 금사업자와 스크램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7조의4제4항	14W			
⑮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	법 제126조의7제13항	14V			
⑮⑱ 세액공제 합계		1A3		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,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.
2.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.
3. ⑩ 대상세액란: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.
4. ⑪ 공제세액란: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5.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6.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에 별도로 적습니다.
7. ⑦ 근거법령란에서 ‘법’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‘령’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을 뜻합니다.

투자자산 명세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과 세 연 도

상호 또는 법인명

사업자등록번호

1.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

- | | | |
|-----|-----|---|
| [] | 1) |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조(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) [코드 : 131] |
| [] | 2) |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(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[코드 : 134] |
| [] | 3) |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6(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)[코드 : 135] |
| [] | 4) |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5(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[코드 : 136] |
| [] | 5) |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2(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 : 177] |
| [] | 6) |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3(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 : 14A] |
| [] | 7) |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8(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[코드 : 14B] |
| [] | 8) |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9(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: 18B] |
| [] | 9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3조(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) [코드 : 14N] |
| [] | 10) |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4(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 : 142] |
| [] | 11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조의2제12항(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 : 18L] |
| [] | 12) |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1(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[코드 : 18I] |
| [] | 13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(통합투자세액공제-일반) [코드 : 13W] |
| [] | 14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(통합투자세액공제-신성장사업화시설) [코드 : 13X] |
| [] | 15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(통합투자세액공제-국가전략사업화시설) [코드 : 13Y] |
| [] | 16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(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-일반) [코드 : 1B1] |
| [] | 17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(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-신성장사업화시설) [코드 : 1B2] |
| [] | 18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(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-국가전략사업화시설) [코드 : 1B3] |

2. 투자 자산별 명세

(단위: 원)

[illegible]

첨부서류	1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(EMS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2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5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-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적어 송달한 고지서 사본 -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,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하였던 서류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은 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.
2. 각 과세연도에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조, 제22조,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, 제22조의8, 제22조의9, 제22조의11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조의2제12항, 제21조제11항,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3. "2. 투자 자산별 명세"란: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적고,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.
4. "① 투자자산 종류"란: 위 "1.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"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(숫자 1~13)를 적습니다.
* 예시)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→ 7
5. "② 투자자산 소재지"란: 투자한 곳(투자처)의 소재지를 시/도 + 시/군/구 + 읍/면 + 도로명까지 적습니다.
6. "③ 투자자격 여부"란: 중고품 여·부, 리스 자산(금융리스 제외) 여부,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·부를 적습니다.
7. "⑦ 투자금액"란: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.
8.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 받거나 용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
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1. 신청인 현황

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③ 과세연도 년 월 일 부터 ~ 년 월 일 까지	④ [] 중소기업, [] 중견기업, [] 일반기업

2. 취득한 기술의 종류

[] 특허권	[] 실용신안권	[] 기술비법	[] 기술
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

3. 기술취득에 관한 사항

① 공통			
가. 국내에서 자체 연구·개발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비법, 기술인지 여부			[] 여 [] 부
② 취득한 기술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인 경우			
가. 「특허법」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인지 여부	특허번호	취득금액 합계	
나. 「실용신안법」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인지 여부	등록번호	취득금액 합계	
③ 취득한 기술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인 경우			취득금액 합계
가.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	금 액 (원)	기 준	적격 여부
		500억 원 이하	[] 여 [] 부
나. 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비법, 기술 등 거래 전체의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	금 액 (원)	기 준	적격 여부
		70억 원 이하	[] 여 [] 부
다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·관리 여부			[] 여 [] 부
④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외 기업			
가. 특허권 등을 양도한 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		[] 여 [] 부	
나. 특허권 등을 양도한 중소기업의 사업자번호			

작성 방법

※ 각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라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세액공제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- 취득한 기술의 종류는 ① 「특허법」에 따른 특허권, ② 「실용신안법」에 따른 실용신안권, ③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(공업소유권, 「해외건설 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합니다)으로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④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로 구분하여 선택하며,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을 취득한 경우 중복하여 선택합니다.
- 특허번호는 취득한 특허권의 「특허법」에 따른 특허번호를 기재합니다(복수의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", "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).
- 등록번호는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「실용신안법」에 따른 실용신안권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(복수의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", "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).
- 직전 5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기재합니다(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,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. 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법인의 경우 "0"원으로 기재합니다).